

## 제 2 장 회 원

### 제5조 (회원의 종류 및 자격)

본회 회원의 종류 및 자격조건은 각 항과 같다.

- ① 정회원은 여성 디자이너 및 관련종사자로서, 7년 이상의 디자인 실무 경력을 갖추거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,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.
- ② 이상의 조건에 미달하는 자는 준회원의 자격을 갖는다.
- ③ 정회원은 이사회 임원 1인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 임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여야 한다.
- ④ 이상의 조건과 별도로, 이사회의 승인에 의하여 법인회원 및 명예회원을 들 수 있다.

### 제6조 (회원의 권리)

- ① 정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으며 사업추진 시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정관에서 정한 권리를 갖는다.
- ② 모든 회원은 본회가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을 구독할 수 있다.

### 제7조 (회원의 의무)

① 정회원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. 단, 정 회원으로서 1년 이상 해외 장기체류자는 발생기간 동안의 회비납부의 의무가 면제되며 귀국과 동시에 면제 사유가 해제된다.

- ②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도 지속적인 활동을 원할 경우 정해진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.

### 제8조 (회원의 입회 및 탈퇴)

① 본회의 회원 자격을 가진 여성디자이너로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입 신청서 접수일 이후 2주 이내에 입회가 가능하다.

② 회원은 60일 이전에 탈퇴신청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 탈퇴를 예고하고 예고 기간 경과 후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.

### 제9조 (회원의 포상 및 제명)

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
② 본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을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.

1. 연속 3회 이상 회비 납입 의무를 이행 하지 않은 회원

2. 정관, 제 규약, 제 규정 또는 주무관청의 처분에 위반한 회원
3. 기타 본회의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회원